

2023년 하반기 주요 상담 내역 공개

	연번	일자	질문 내용	답변 내용	처리 결과
하반기	1	2023.07.20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부 기관에서 기관 운영평가 관련 현장평가를 수행하게 되었는데, 현지에 방문하여 문서 검토를 통해 평가 문항에 따라 서면 평가하는 작업을 수행하며, 종료 시 작성한 총평을 기관 운영진에 구두로 간단히 보고하는 절차가 있음 - 해당 활동과 관련하여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외부강의등의 범위는 1) 직무와 관련성이 있으며, 2)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, 지식을 전달하며, 3) 외부 요청에 의한 계속성이 없어야 함 - 문의하신 건과 관련하여서는 직무와 관련이 있고 계속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,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며 평가과정에서 회의의 형태가 포함되어 있다면 3가지 조건에 모두 충족하기에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. - 외부강의등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기를 바람 	
	2	2023.07.25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병원 직원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관내(도내) 업체를 대상으로 직원 프로모션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여 동의하는 업체에 한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문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직무와 관련된 공공기관의 공직자에 대한 특혜성 할인/장학금 혜택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, 예외적 허용 기준(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)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음 - 할인 혜택에 있어서는 공직자에게 할인해 주는 것이 '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'으로 인정되어야 하고,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거(협약 등)가 정당하며 그 정당성은 할인을 제공하는 목적/동기/직무의 관련성이 있는지/사회상규상 허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	
	3	2023.07.26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타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사례금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탁금지법 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들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, 후원,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며, 동일 조 제3항에 따라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법에서 정한 금품등의 경우에는 수수를 허용하고 있음 - 해당 문의사항은 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사항 중 '사적거래(증여는 제외한다)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'에 해당하며, 세부 사항에 대해 검토한 뒤에 허용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- 1)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수 있는지, 2)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과제가 그만큼의 사례금을 받을만한 업무인지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	
	4	2023.11.10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같은 과에 소속되어있지만, 다른 팀원의 경조사(결혼) 축의금에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청탁금지법 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제3항 제1목에 따라 '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, 격려,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'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 	